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1608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217,720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216,100원, 지방교육세 43,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가. 원고는 [redacted]시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순수민간단체로서 인류의 문학 정서를 통한 자연, 생명, 인간, 문명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승화한 문화향유로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정신문화 구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① 세계문학예술인 상호 문화교류 및 문학예술정신 창달을 위한 교육, 출판 및 전시(갤러리 운영 및 작품유통 교류) 및 국제문예지(B)를 발행하고 C대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일을 지원·수행하고, ② 세계예술문화의 목적에 수범, 우수 공헌자를 선발 이에 준한 품격표증(B 문학상, 문학인문연구 명예학위, 계관명예, D)을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하며, ③ 세계예술문화에 따른 E 문예관을 관리·운영하고, ④ 세계예술문화 유지, 계승발전과 향후 그 정신에 따른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07. 3. 2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F는 2013. 9. 24. 원고에게 [redacted]구 G 대 6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32.7분의 332.7 지분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F와 그 처인 H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중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지방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17,720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216,100원, 지방교육세 43,54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4, 5,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피고가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한 법적 근거를 알 수가 없다.

2) 원고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이 사건 주택 부분에서 세계문학예술인 상호 문화교류 행사 준비, 문예지 발간 등 원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해 왔고, 원고의 대표자인 F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차, 구상·집필을 위한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분과 F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세액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납세고지서에는 재산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데, 여기서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부분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내지 특정 가능한 일부를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5, 28,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 부분은 1975년 1월경 이래로 원고의 대표자인 F와 그 처인 H의 주거지로 사용되어 온 점, ② 이 사건 주택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소유인 서울 양천구 I 지상 건물에 강당, 문예박물관, 갤러리, 연구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분사무소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세 등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데,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F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J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신축하여 1974. 12.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 부분은 지층 6.48㎡, 1층 89.36㎡, 2층 52.3㎡로 연면적이 148.14㎡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나) F는 1976년경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 위에 1층 상가 39.54㎡(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 부속 상가 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고, 198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연면적 458.13㎡(지층 118.68㎡, 1층 123.95㎡, 2층 115.44㎡, 3층 100.06㎡이다)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① 이 사건 주택 부분과 그 부속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 343.55㎡, ② 이 사건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 289.15㎡로 구분[1]한 다음,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면적을 271.18㎡(= 위 343.55㎡ ×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연면적 148.14㎡ ÷ 이 사건 주택 부분과 그 부속 상가 부분의 연면적 합계 187.68㎡)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위 343.55㎡ 중 332.7㎡를 출연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의 면적을 262.61㎡(= 위 271.18㎡ × 332.7㎡ ÷ 343.55㎡)로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6, 7,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1동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 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면적은, 이 사건 토지를 ①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연면적과 ②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 상가 부분 및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145.13㎡(= 이 사건 토지의 면적 632.7㎡ ×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연면적 148.14㎡ ÷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645.81㎡)가 된다. 나아가

1)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1동의 부속토지를 위와 같이 구분하였는데, 이렇게 구분할 법령상 근거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의 면적은 위 145.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인 632.7분의 332.7을 곱한 76.31㎡(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면적이 145.13㎡이고 그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의 면적이 76.31㎡임을 전제로 산출되어야 하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윤진규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4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제4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